

I-Food Park 보상계획 공고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2017- 132호)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의 "I-Food Park"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보상물건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I - 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61,700m²
- 사업기간 : 2017. 6. 5. ~ 2018. 12. 31.
- 사업시행자 : 인천식품단지개발(주)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 보상토지조서 및 지장 물건조서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일간지에는 대상 물건 조서에 한하여 공고합니다)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 3. 26. ~ 2018. 4. 8.(14일간)

※ 열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열람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사무실 / ☎032-561-1186

(인천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2)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5772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본관 4층)

○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은 열람기간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방법은 공고 또는 통지된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이내에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사무실(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양식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8년 3월 ~ 4월 예정

- 1단계 : 현재 협의시 즉시 지급(개별 협의통지 발송시부터)

- 2단계 : 토지 등 감정평가하여 손실보상 협의 후 지급

○ 보상절차

- 1단계 :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거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현재 보상지급 중이므로, 인천식품단지개발(주) 방문하여 협의 가능함)

- 2단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시 현금보상(계좌입금)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계획공고 개별통지에 포함된 #별지양식(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기재하시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5. 기타사항

- 보상 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세부내역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단,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사무소(☎032-561-1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